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10 회 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3.

고 명 욱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고명욱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상위법령과 중복된 경조사 휴가 일수를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17조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별표 5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제외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재정비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시간 외의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,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00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: 고명욱, 도하석, 박정환,  
남현주, 강한곤, 정순옥,  
황국주, 서보영

## 1. 제안이유

-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,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재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달서구의의회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- 상위법령과 중복된 경조사 휴가 일수 재정비(안 별표 5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, 별표 1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사생활 보장) ① 의장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락, 업무지시 등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발생·긴급상황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의장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**경조사 휴가일수표** (제1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17조(사생활 보장) ① 의장은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무분별한 연락, 업무지시 등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난발생·긴급상황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② 의장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7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8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</p>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~ ⑭ 생략

### 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#### 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